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1-22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4월 일

제출자 : 강서구청장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아동·청소년 보호와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전담부서를 구축하여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'교육청소년과'를 '교육지원과'로 명칭 변경 및 사무분장 조정(안 제4조)
- 나. '아동청소년과'를 신설 및 사무분장 조정(안 제7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1. 3. 3. ~ 3. 23.) 결과 : 의견 없음
- 2) 규제사전심사 결과 : 해당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4조제1항 중 “교육청소년과”를 “교육지원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제5호 중 “아동친화도시 및 청소년 건전육성, 평생교육”을 “평생교육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장애인복지과”를 “아동청소년과, 장애인복지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통합관리, 아동·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”을 “통합관리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아동친화도시 조성, 아동·청소년 지원, 아동보호·복지에 관한 사항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2조제2항 중 “행정관리국장”을 “생활복지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교육청소년과장”을 “아동청소년과장”으로 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행정관리국) ① 행정관리국에 행정지원과, 자치행정과, 협치분권과, 문화체육과, <u>교육청소년과</u>, 민원여권과를 둔다.</p> <p>②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학교지원, 친환경 무상급식, <u>아동친화도시 및 청소년 건전육성, 평생교육, 도서관 운영, 장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제7조(생활복지국) ① 생활복지국에 복지정책과, 생활보장과, <u>장애인복지과</u>, 가족정책과, 어르신복지과를 둔다.</p> <p>② 생활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국민기초생활보장, 주거복지, 자활사업, 의료보호, <u>통합관리, 아동·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3. ~ 5. (생략)</p>	<p>제4조(행정관리국) ① ----- ----- ----- <u>교육지원과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평생교육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생활복지국) ① ----- ----- <u>아동청소년과, 장애인복지과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통합관리</u> -----</p> <p>3. <u>아동친화도시 조성, 아동·청소년 지원, 아동보호·복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~ 6. (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 
제3조제1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

### 4. 작성자

성 명	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장 김병욱 (담당 : 행정6급 소윤희)
연락처	02-2600-6032

#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

## □ 자치법규명

-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□ 개정이유

- 아동·청소년 보호와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- ‘교육청소년과’를 ‘교육지원과’로 명칭 변경 및 사무분장 조정 (안 제4조)
- ‘아동청소년과’를 신설 및 사무분장 조정(안 제7조)

## 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안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행정조직 내부에 관한 사항으로,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.

##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평가번호	2021 - 8				
자치법규명	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				
평가담당부서	감사담당관	직 급	행정7급	성 명	이경민
입안주무부서	행정지원과	통보(조치)일		2021. 3. 15.	
관련조문		검토결과		조치사항	
개정안 전부		원안 동의		-	

##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

관리번호	2021A서울강서009			
정책명	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	
소관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 강서구		
	부서명	행정지원과		
	담당자명	소유희	전화번호	02-2600-6108
담당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 강서구		
	부서명	가족정책과		
	담당자명	최은영	전화번호	02-2600-6762
체크리스트 제출일자	2021년 03월 04일			
완료(제외) 통보일자	2021년 03월 08일			

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1년 03월 23일

**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**

[시행 2021. 1. 5]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, 타법개정]

- 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**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- 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